

제10장 시설운영

제32조(대여범위)

미디어센터가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스튜디오 A, B, C
- ② 영상 조정실
- ③ 분장실
- ④ 편집실
- ⑤ 락커룸
- ⑥ 디지털 교육실
- ⑦ 일반 강의실
- ⑧ 부속설비 : 빔 프로젝트, 영상장비 및 오디오 장비, 냉·난방기, 회의용 원탁, 의자 등

제33조(대여시간)

- ① 대여가능시간은 화~금요일 10:00~21:00, 토요일 10:00~17:00로 한다.(개정 2022.1.28.)
- ② 1회 기본대여시간은 2시간이며, 최대 4시간까지 대여할 수 있다. 대여시간에는 작업시간 및 종료 후 정리시간을 포함한다.
- ③ 특정 시간 및 요일의 반복적 사용에 대하여 월 최대 2회로 제한한다.
- ④ 대여시간은 운영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제34조(기본수칙)

구민들의 미디어 능력함양 및 구민 다수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미디어센터의 시설을 대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당초 신청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 적발 될 경우 6개월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-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1. 특정단체·개인의 이익이나 영리추구 목적의 경우
 2. 전도·포교 등 종교적 목적의 경우
 3.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
 4. 기타 미디어센터의 운영목적과 운영방향 등에 위배되는 경우
- ② 대관 및 퇴실은 본인이 직접 하며 신분증(등본상 주소기재)을 반드시 지참한다.
- ③ 대관한 시설(장비포함)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④ 미디어센터의 장비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부적절한 사용이 예상되는 대여는 불가하다.
- ⑤ 예약된 대여 입출 시간과 기일은 반드시 지켜 타 대여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.
- ⑥ 대여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파손 및 분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.
- ⑦ 미디어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.
 -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자산을 파손할 수 있는 행위
 - 미디어센터의 전화를 포함해 사무실, 컴퓨터 혹은 다른 장비의 허가받지 않은 사용

 - 타인의 교육, 창작물 제작 작업 등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
 - 모든 대여시설의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

- 장비와 시설 등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행위
- 그 외 조례나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포괄적 행위

제35조(대여신청)

- ① 대여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희망일 3일 전까지 할 수 있다. 단, 교육실 대여의 경우 프로그램이 연중 상시 운영되므로 미리 상담을 통해 대여신청이 가능하다.
- ② 미디어센터의 모든 시설 대여 신청 시 사용 목적과 계획을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시설 연속 대여 가능 기간은 최대 5일(휴관일 제외)로 한다.

제36조(대여승인)

- ① 대여신청 담당자의 사용승인을 받아 예약을 완료한다. 단, 연속 대여 가능 기간을 초과하는 장기성 대여의 경우, 센터장의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한다.
- ② 시설 이용(장비포함) 신청자의 운용능력과 이해가 미숙하여 기자재 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미디어센터 운영상의 사유로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.

제37조(대여취소 및 변경)

- ① 예약일 전일까지 본인이 직접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취소 및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하다.
- ② 시설대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- ③ 대여기일 연장은 반납시간 전까지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미 시설대여 예약자가 있는 경우 불가하다.

제38조(대여 시 유의사항)

- ① 시설(장비포함)은 신청자 본인이 미디어센터 담당자와 함께 대여 시설 내 장비의 품목, 작동상태, 파손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. 대여가 완료된 시점(신청자에게 인계를 완료한 시점)으로 부터 반납 전까지 발생하는 장비의 파손, 분실에 대한 책임은 대여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.
- ② 시설(장비포함) 대여 후 이상이 생길 경우 미디어센터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.
- ③ 반납 시 대여자와 담당자가 시설(장비포함)의 점검을 함께해야 하며 시설(장비포함)이 대여자의 귀책사유로 파손 되었을 경우 대여자는 직접 정규 A/S센터에 의뢰해 수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리비도 직접 부담한다. 대여품목을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모델로 구입, 반납해야 하며, 모델이 단종 된 경우는 그와 동등하거나 상위의 장비로 배상해야 한다.
- ④ 파손, 분실의 책임이 있는 회원은 시설(장비포함)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기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으며 파손, 분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만 10일 경과 후 매일 대여료의 50%가 부과된다.
- ⑤ 시설(장비포함)을 대여하여 제작하거나 상영한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디어센터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⑥ 이전 대여자가 센터장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반납 일시를 어기거나 기기 등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다음 대여자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 또는 동종 품목으로 변경 대여할 수 있다.

제39조(주의 조치)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어길 경우 주의 조치를 받게 되고 누적 3회 이상 주의조치를 받을 경우 대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. 단, 주의 조치를 받은 후 2년이 지나면 해당 주의 내역은 소멸된다.

- ① 예약을 한 후 별도의 취소 없이 대여를 하지 않을 경우
- ② 본인이 직접 대여 또는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
- ③ 회원이 아닌 제3자에게 사용케 하거나 재 대여를 할 경우
- ④ 대여 및 반납 시간을 어기거나 협의 없이 연체했을 경우
- ⑤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경우
- ⑥ 조작미숙 또는 관리소홀로 장비를 파손·분실 했을 경우
- ⑦ 대여승인 후 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
- ⑧ 기타 미디어센터의 운영목적과 규정 등에 위배된 경우

제40조(사용료 등 감면)

- ① 사용료징수 및 감면, 반환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본 운영규정에 따른다.
- ② 시설(장비포함) 대여자는 사용시작 전까지 미디어센터에서 정한 사용료를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월 1회 면제할 수 있다.

제41조(작업결과물의 무상사용권) 미디어센터는 지원시설(장비포함) 이용에 따른 작업결과물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무상사용권을 갖는다.

- ① 미디어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시설(장비포함)을 이용하여 완성한 작품은 본 센터 주최의 무료행사·교육·홍보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제의 상영에 사용할 수 있으며 미디어센터의 인터넷 방송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.
- ② 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완성한 작품의 경우 본 센터의 명칭을 작업결과물에 삽입하고 완성작 1점을 미디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